

포항가속기연구소 연구원 연구년제 시행세칙

제정 2001. 7.31

개정 2016.12. 9

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포항가속기연구소(이하 “본 연구소“라 칭함) 연구원의 연구년제 시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연구년의 정의) 이 세칙에서 정하는 연구년이라 함은 본 연구소에 일정기간 근무한 연구원에 대하여 연구소에서의 근무를 면하게 하고 일정기간 동안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개인에게 허가하는 연구기간을 말한다.

제3조(자격 및 기간) 본 연구소에서 6년 이상 근속한 책임대우급 연구원 이상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년을 신청 할 수 있다. 다만, 연구년 만료 후 정년퇴직까지의 잔여 근무 연수가 3년 미만인 연구원은 제외한다. (개정: 2016.12.9.)

1. 연구소 임용 후 또는 직전 연구년 종료 후 6년 이상 근속한 연구원은 1년의 연구년을 신청 할 수 있다.
2. 직전 연구년 종료 후 3년 이상 근속한 연구원은 6월의 연구년을 신청할 수 있다.

제4조(인원제한) 연구소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연간 책임대우급 연구원 이상 총인원의 10%이내에서 실시한다. (개정: 2016.12.9.)

제5조(신분보장) 연구년 기간 동안 당해 연구원의 신분보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본 연구원으로서 신분을 보유한다.
2. 보수는 총급여액의 1할, 차량유지비, 정보비를 제외한 전액을 지급한다.
3. 연구년 기간은 재직연수에 산입하며, 연구년 기간 중 승진 등은 계속 시행한다.

제6조(의무) ① 연구년 기간이 종료된 연구원은 즉시 연구소에 복귀하여야하며 복귀 후 연구년 기간의 2배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본 연구소에 재직하여야 한다. 이를 위함한 연구소원은 연구년 기간 중 받은 보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.

② 연구년 기간이 종료된 연구소원은 종료 후 30일 이내에 소속부서 부서장을 경유하여 소장에게 연구년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7조(신청 및 승인절차) 연구년을 허가 받고자 하는 연구원은 사전에 소속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연구년 개시 6개월 전에 연구년 신청서, 부서장 신청서 및 연구년 활동계획서를 연구소 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하며, 인사위원회의 심의·의결과 소장의 승인을 거쳐 확정한다.

제8조(직무대행자의 임명) 연구년을 허가받은 연구원에 대하여 소속부서에서는 직무대행자를 정하거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9조(출장, 파견 및 연수 등과의 관계) 연구를 목적으로 한 6개월 이상의 출장, 파견

및 연수 등의 기간은 그 기간만큼 연구년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.

제10조(휴직과의 관계) 휴직중인 연구소원은 연구년을 신청 할 수 없다.

제11조(영리목적의 활동금지) 연구년을 허가받은 연구원은 그 기간 중 연구기관 및 학술단체 등의 연구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나 순수한 영리목적의 타기관 피고용은 금지한다.

제12조(대상기관) 연구년 기관은 본 연구소의 연구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속기연구소 또는 관련 기관으로 제한한다.

제13조(소환) 소장은 연구년을 허가받은 연구원이 그 기간 중 목적활동 위반 시에는 즉시 소환을 명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01년 7월 31일부로 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16년 12월 9일부로 제정, 시행한다.